

#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기열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06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박기열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홍성룡, 노승재, 오현정, 문장길,  
이영실, 김제리, 고병국, 김호평,  
김소양, 전석기 의원 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에 의하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, 품질을 향상시키고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설계의 타당성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 의 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일련의 설계심 의와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설계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안 제3조제1항제11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건설기술진흥법」, 「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11호”를 “제12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능)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1. ~ 10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〈신 설〉</p> <p><u>11.</u>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(생략)</p>	<p>제3조(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1. ~ 10. (현행과 같음)  <u>11.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                      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사                      항</u>                      1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</p>